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8630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863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03102 판결

###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C

2. E

변론 종결 2017. 3. 24.

판결 선고 2017. 5. 1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03102 판결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3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E이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7,995,0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에게 107,995,0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면 3행부터 제13면 20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판결 제3의 라.항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1심판결 제18면 19행부터 제19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20면 11행

다음에 아래 제3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변경 부분

### 가. 제1심판결 제12면 3행부터 제13면 20행까지 부분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은 중개인 없이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피고 C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는데, 평소 서로 알지 못하던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중개인 없이 거래가액이 1,450,000,000원에 이르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매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의 인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② 계약의 이행경과를 보아도, 당초 매매대금 1,450,000,000원 중 1,1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외에 나머지 350,000,000원은 매매계약 당일인 2015. 8. 12. 모두 지급되어야 하나,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15. 9. 30. 100,000,000원, 2015. 10. 2. 140,000,000원이 지급되었고, 70,000,000원은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국미용메디팜에 대한 소외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로 그 지급에 갈음한 점, ③ 2015. 10. 2. 매매대금 140,000,000원을 아직 지급하기 전인 2015.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서 보듯이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와 비교하여 상당히 이례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약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제1심판결 제3의 라.항 부분

라.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던 곳으로 그 명의만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앞으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인데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통해 B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실제 명의를 회복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을마 제9, 12, 13, 14, 17, 18호증, 제1심 증인 T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2011. 3. 2.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도시가스요금,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마 제3,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B과 피고 E의 아버지인 U의 소유였는데, U이 사망하자 B이 2013. 9.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그 대가로 피고 E을 비롯한 U의 상속인 5명에게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한 점, ② 피고 E이 2015. 6.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인 2015. 6. 2. 이와 관련하여 B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E이 진정한 소유자라면 굳이 이러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나온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2)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고, B에게 상당한 가격을 주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점 등을 들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를 원래 피고 E이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피고 E의 형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415,000,000원인데, 피고 E은 위 30,000,000원을 지급하고, B의 사업체인 V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357,004,992원 및 중도상환수수료 1,449,000원 합계 358,453,992원을 대위변제한 외에 나머지 26,546,008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을마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E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제18면 19행부터 제19면 제11행까지 부분

갑 제4, 8, 19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9. 30. 해지로 인하여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건물의 가액은 1,55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당시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240,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한 채무가 1,453,260,55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은 310,000,000원(= 1,550,000,000원 - 1,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 등 매매계약은 3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추가 부분

피고 E은 자신이 B에게 실제로 지급한 30,000,000원이 가액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함에 있어 취소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를 공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배형원**

**판사신민석**

**판사이종기**

**별지**